

이달의 공정 주거(Fair Housing) 팁

팁7 - 제3자의 임대료 지급

“두 달 전에 신경 쇠약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는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케이스 관리를 받기 위해 비영리 기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제가 안정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9개월간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제3자에게 월세를 받기를 거부하고 제가 지급하는 월세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만 돈을 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택을 동등하게 사용하고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규칙, 정책, 관행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장애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필요한 경우, 제3자로부터 임대료 지급을 받지 않는 임대인의 통상적인 방식에 대해 예외 적용 요청을 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해야 할 조치: 기관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제3자 지급을 허가하도록 임대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하십시오. 담당 치료 전문가에게 귀하의 장애 및 제3자의 임대료 지급 허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소견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귀하의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진단명을 묻거나 의료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상호 협력 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지역 공정 주거 기관,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 공정 고용 및 주거부) 또는 federal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연방 주거 및 도시 개발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UD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800-669-9777](tel:800-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

DFEH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시려면 [800-884-1684](tel:800-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http://www.dfeh.ca.gov/complaint-process/complaint-forms/>를 방문하십시오.

공정 주거법은 다음 특성을 근거로 한 거주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출신 국가, 피부색, 성별, 혼인 여부*, 혈통*, 가족 상황, 장애, 성적 지향*, 소득원.*

*는 연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별이 금지된 항목을 나타냅니다.

고지 사항: 공정 주거법 이달의 팁 프로그램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적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MHAS, 지역 공정 주거 의회 또는 기타 개인적으로 선택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공정 주거법 이달의 팁은 U. S. Dep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Fair Housing Initiatives Program(주거 및 도시 개발 공정 주거 계획 프로그램)의 보조 기금(보조 기금 #FE01160050-01-01)으로 제공됩니다.